

[붙임] 원광보건대학교 규정 개정 승인문

1. 원광보건대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7조(조직) 제1항 중 “11.(중략) 사업운영팀, 산학실습팀, 학교기업사업단, 기업신속대응센터를 둔다.”를 “(중략) 사업진흥팀, 산학교육팀을 둔다.”로 한다.
 - 제35조(수업) 제1항 중 “(중략) 온라인수업”을 “(중략) 원격수업”으로 하고, 같은조 제5항 “⑤ 수업의 형태는 대면수업 또는 비대면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 제46조(졸업) 제3항 중 “(중략) 현장실습 의무학과는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고는 졸업할 수 없다.”를 “(중략) 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로 한다.
 - 제80조(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 제1항 중 “6.(중략) 귀금속보석연구센터, 창업보육센터, 산단캠퍼스지원단, 패션주얼리커플링사업단, 보건과학연구소, 간호과학연구소, 문화관광연구소, 학교기업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기업신속대응센터, 창의융합교육센터”를 “6.(중략) 기업신속대응센터, 창의융합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학교기업사업단, 보건과학연구소, 간호과학연구소, 문화관광연구소”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7조(조직) ① (생략) 1.~10. (생략) 11. 산학협력단에는 <u>사업운영팀, 산학실습팀, 학교기업사업단, 기업신속대응센터</u> 를 둔다. 12.~13. (생략) ②~⑤ (생략)	제7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 1.~10. (현행과 같음) 11. ----- <u>사업진흥팀, 산학교육팀</u> 을 둔다. 12.~13. (현행과 같음) ②~⑤ (현행과 같음)
제35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학기 수업, <u>온라인수업</u> , 방송·통신과 현장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현장학습 수업을 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생략) ③ (삭제) ④ (생략) ⑤ <항신설>	제35조(수업) ① ----- <u>원격수업</u> ,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수업의 형태는 <u>대면수업 또는 비대면수업</u> 으로 진행할 수 있다.

현행	개정
제46조(졸업) ① ~ ② (생략) ③ 졸업학점 중 교양교과 필수학점은 8학점(2년제), 10학점(3년제), <u>현장실습 의무학과는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u> ④ ~ ⑥ (생략)	제46조(졸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졸업학점 중 교양교과 필수학점은 8학점(2년제), 10학점(3년제) <u>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u>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0조(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 ① (생략) 1.~5. (생략) 6. 산학협력단에는 <u>귀금속보석연구센터, 창업보육센터, 산단캠퍼스지원단, 패션주얼리커플링사업단, 보건과학연구소, 간호과학연구소, 문화관광연구소, 학교기업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기업신속대응센터, 창의융합교육센터</u> 를 둔다. 7.~8. (생략) ② (생략)	제80조(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 ①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 <u>기업신속대응센터, 창의융합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학교기업사업단, 보건과학연구소, 간호과학연구소, 문화관광연구소</u> -----, 7.~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직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9조(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 제6항 중 “(중략) 귀금속보석연구센터, 산단캠퍼스지원단, 패션주얼리커플링사업단, 보건과학연구소, 간호과학연구소, 문화관광연구소, 학교기업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기업신속대응센터, 창의융합교육센터”를 “(중략) 기업신속대응센터, 창의융합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학교기업사업단, 보건과학연구소, 간호과학연구소, 문화관광연구소”로 한다.

– 제17조(산학협력단) 제1항 중 “(중략) 사업운영팀, 산학실습팀을”을 “(중략) 사업진흥팀, 산학교육팀을”으로 한다.

– 별표1 [각 위원회]의 홍보위원회 주관부서인 “기획조정처”를 “입학홍보처”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제9조(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 (생략) ⑥ 산학협력단에는 <u>귀금속보석연구센터, 산단캠퍼스지원단, 패션주얼리커플링사업단, 보건과학연구소, 간호과학연구소, 문화관광연구소, 학교기업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기업신속대응센터, 창의융합교육센터</u>를 둔다.	제9조(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 (현행과 같음) ⑥ ----- <u>기업신속대응센터, 창의융합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학교기업사업단, 보건과학연구소, 간호과학연구소, 문화관광연구소</u> -----.								
제17조(산학협력단) ① 산학협력단에는 <u>사업운영팀, 산학실습팀</u>을 둔다. ②~③ (생략)	제17조(산학협력단) ① ----- <u>사업진흥팀, 산학교육팀</u>을 -----. ②~③ (현행과 같음)								
별표1. [각 위원회] <table border="1"> <tr> <th>위원회</th><th>주관부서</th></tr> <tr> <td>홍보위원회</td><td><u>기획조정처</u></td></tr> </table>	위원회	주관부서	홍보위원회	<u>기획조정처</u>	별표1. [각 위원회] <table border="1"> <tr> <th>위원회</th><th>주관부서</th></tr> <tr> <td>홍보위원회</td><td><u>입학홍보처</u></td></tr> </table>	위원회	주관부서	홍보위원회	<u>입학홍보처</u>
위원회	주관부서								
홍보위원회	<u>기획조정처</u>								
위원회	주관부서								
홍보위원회	<u>입학홍보처</u>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사무분장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16조(국제교류처) 제1항 중 “(중략) 국제협력팀을”을 “(중략) 국제협력팀, 한국어학당, 세종학당, 해외출장소, 원어민사업단, 글로벌교육센터”로 하고, 같은조 “1.(중략) 국내분야”를 “1.(중략) 국내·외 분야”로 하며, 같은조 “11.(중략) 관리에”를 “11.(중략) 유치 및 관리에”로 하며, “12.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 및 시행 13. 외국대학 및 기관과의 교류 협력 및 합작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14.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홍보 및 지원 15. 학생 및 교직원 국제활동과 관련된 자문 16. 해외유학 장학기금에 의한 유학생 선발 17.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와 전형 18. 해외교육센터 사업기획 및 운영관리 19. 출입국 관련 행정에 관한 업무 20. 기타 총장이 정하는 국제업무 관련 사항”을 신설하며, “12.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을 “21.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으로 호 이동하여 신설하고, 같은조 “③ 한국어학당, 세종학당, 해외출장소, 원어민사업단, 글로벌교육센터는 국제협력팀에서 통할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를 신설한다.

- 제17조(산학협력단) 제1항 중 “(중략) 사업운영팀, 산학실습팀을”을 “(중략) 사업진흥팀, 산학교육팀을”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사업운영팀에”를 “사업진흥팀에”로 하며, 같은조 같은항 “1. 국고보조금사업 지원 및 신청에”를 “1. 정부, 정부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재정 지원사업 신청 및 관리운영에”로 하며, 같은조 “2. 국고보조금 지원에”를 “2. 정부, 정부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연구사업 신청 및 관리 운영에”로 하고, “3. 국고보조금 운영사업 총괄에”를 “3. 정부, 정부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용역사업 신청 및 관리 운영에”로 하며, “4. 중소기업청 재정지원 사업에”를 “4. 각종 위탁사업 신청 및 관리 운영에”로 하고, “5. 교육부 연구비 신청에”를 “5. 각종 공모사업 신청 및 관리 운영에”로 하며, “7. 산학협력사업 운영에”를 “7. 산학협력단 직원 인사 및 노무에”로 하고, “8. 중소기업 기술지도에”를 “8. 산학협력중점교수단 역량 강화에”로 하며, “9. 학교기업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를 “9. 산학협력사업 기획 및 운영에”로 하고, “10. 지적재산권 취득 및 관리에”를 “10. 관산학 클러스터에”로 하며, “11. 부설기관 및 부설 연구소 운영지원에”를 “11. 산업체 기술지도 및 산학연구장비 공동활용에”로 하고, “12.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관리에”를 “12. 지식재산권 취득 및 관리에”로 하며, “13. 특허 및 특허권 관리에”를 “13. 기술사업화에”로 하고, “14. 상공회의소 연계사업 관리에”를 “14. 비즈니스모델 관리 운영에”로 하며, “15.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공모신청 및 보고에”를 “15. 산학협력단 설치 학교기업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로 하고, “16. 과학기술원, 과학기술평가원 및 각 기관의 공모 및 통계에”를 “16. 산학협력단 산하 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 운영 지원에”로 하며, “17. 각 외부공모 신청자 접수, 지원 및 연구결과 보고에”를 “1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18호와 제19호를 삭제하며, 같은조 제3항의 “산학실습팀에”를 “산학교육팀에”로 하고, 같은항 “1. 산학협력에 관한 전반적인”을 “1. 산학교육에 관한 기획 및 운영에”로 하며, “2. 산학협력관련 업적관리 실적 통계에”를 “2. 사회수요 맞춤형교육 기획 및 운영”으로 하고, “3. 현장실습관련 기획,운영,평가 관리에 관한 총괄”을 “3. 현장실무교육 기획 및 운영에 관한”으로 하며, “4. 현장실습에”를 “4. LINC+ 현장실습에”로 하고, “5. 임상(현장)실습비 예산배정 및 운영”을 “5. LINC+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으로 하며, “6. 현장실습 순회지도비 및 관리 운영”을 “6. 캡스톤디자인 운영에 관한”으로 하고, “7. 현장실습 출장비 산출 및 복명”을 “7. 학생 창업동아리 운영에 관한”으로 하며, “8. 현장실습 통계”를 “8. 가족회사 등 산업체 관리 운영에 관한”으로 하고, “9. 현장실습 산학협력 운영 관리”를 “9. 산업체 만족도 조사에 관한”으로 하며

“10. 현장실습 교육과정 개발에”를 “10. 산학협력 관련 업적관리 및 통계에”로 하고, “11. 현장 실습 업체 관리(DB)에”를 “11.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운영에”로 하며, “12. 산학협력위원회 분과위원 위촉 및 위원회(임상실습) 운영에”를 “12.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지원에”로 하고, “13. 각종 사업(LINC+사업단 등)현장실습 협력에”를 “13. 창의융합교육센터 운영 지원에”로 하며, 같은조 같은항 “14. 산학 일체형 매장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15.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을 신설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제16조(국제교류처) ① 국제교류처에 <u>국제협력팀</u> 을 둔다.	제16조(국제교류처) ① ----- <u>국제협력팀, 한국어학당, 세종학당, 해외출장소, 원어민사업단, 글로벌교육센터</u> 를 --.
② 국제협력팀에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국제화 사업의 <u>국내분야</u> 총괄에 관한 업무	1. ----- <u>국내·외 분야</u> -----
2. ~ 10. (생략)	2. ~ 10. (현행과 같음)
11. 유학생 <u>관리</u> 에 관한 업무	11. ---- <u>유치 및 관리</u> 에 -----
12. <u><호신설></u>	<u>12.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 및 시행</u>
13. <u><호신설></u>	<u>13. 외국대학 및 기관과의 교류 협력 및 합작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u>
14. <u><호신설></u>	<u>14.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홍보 및 지원</u>
15. <u><호신설></u>	<u>15. 학생 및 교직원 국제활동과 관련된 자문</u>
16. <u><호신설></u>	<u>16. 해외유학 장학기금에 의한 유학생 선발</u>
17. <u><호신설></u>	<u>17.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와 전형</u>
18. <u><호신설></u>	<u>18. 해외교육센터 사업기획 및 운영관리</u>
19. <u><호신설></u>	<u>19. 출입국 관련 행정</u> 에 관한 업무
20. <u><호신설></u>	<u>20. 기타 총장이 정하는 국제업무 관련 사항</u>
21. <u><호이동></u>	<u>21.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u>
③ <u><항신설></u>	<u>③ 한국어학당, 세종학당, 해외출장소, 원어민사업단, 글로벌교육센터는 국제협력팀에서 통할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u>

현행	개정
제 17 조(산학협력단) ① 산학협력단에는 <u>사업운영팀, 산학실습팀</u>을 둔다. ② <u>사업운영팀에</u>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u>국고보조금사업 지원 및 신청에</u> 관한 업무 2. <u>국고보조금 지원에</u> 관한 업무 3. <u>국고보조금 운영사업 총괄에</u> 관한 업무 4. <u>중소기업청 재정지원 사업에</u> 관한 업무 5. <u>교육부 연구비신청에</u> 관한 업무 6. (생략) 7. <u>산학협력사업 운영에</u> 관한 업무 8. <u>중소기업 기술지도에</u> 관한 업무 9. <u>학교기업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u> 관한 업무 10. <u>지적재산권 취득 및 관리에</u> 관한 업무 11. <u>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 운영지원에</u> 관한 업무 12. <u>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관리에</u> 관한 업무 13. <u>특허 및 특허권 관리에</u> 관한 업무 14. <u>상공회의소 연계사업 관리에</u> 관한 업무 15. <u>한국연구재단 연구비 공모신청 및 보고에</u> 관한 업무 16. <u>과학기술원, 과학기술평가원 및 각 기관의 공모 및 통계에</u> 관한 업무 17. <u>각 외부공모 신청자 접수, 지원 및 연구결과 보고에</u> 관한 업무 18. <u>연구협약·인프라사업 협약체결 및 관리에</u> 관한 업무 19.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③ <u>산학실습팀에</u>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u>산학협력에</u> 관한 전반적인 업무 2. <u>산학협력관련 업적관리 실적 통계에</u> 관한 업무 3. <u>현장실습관련 기획, 운영, 평가 관리에</u> 관한 총괄 업무 4. <u>현장실습에</u> 관한 업무 5. <u>임상(현장)실습비 예산배정 및 운영</u> 업무 6. <u>현장실습 순회지도비 및 관리 운영</u> 업무 7. <u>현장실습 출장비 산출 및 복명</u> 업무 8. <u>현장실습 통계</u> 업무 9. <u>현장실습 산학협력 운영 관리</u> 업무 10. <u>현장실습 교육과정 개발에</u> 관한 업무 11. <u>현장실습 업체 관리(DB)에</u> 관한 업무 12. <u>산학협력위원회 분과위원 위촉 및 위원회(임상실습) 운영에</u> 관한 업무 13. <u>각종 사업(LINC+사업단 등)현장실습 협력에</u> 관한 업무 14. <호신설> 15. <호신설>	제 17 조(산학협력단) ① ----- <u>사업진흥팀, 산학교육팀</u>을 둔다. ② <u>사업진흥팀에</u> -----. 1. <u>장부, 정부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 신청 및 관리 운영에</u> ----- 2. <u>장부, 정부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연구사업 신청 및 관리 운영에</u> ----- 3. <u>장부, 정부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운영사업 신청 및 관리 운영에</u> ----- 4. <u>각종 위탁사업 신청 및 관리 운영에</u> ----- 5. <u>각종 공모사업 신청 및 관리 운영에</u> ----- 6. (현행과 같음) 7. <u>산학협력단 직원 인사 및 노무에</u> ----- 8. <u>산학협력중점교수단 역량 강화에</u> ----- 9. <u>산학협력사업 기획 및 운영에</u> ----- 10. <u>관산학 클러스터에</u> ----- 11. <u>산업체 기술지도 및 산학연구장비 공동활용에</u> ----- 12. <u>지식재산권 취득 및 관리에</u> ----- 13. <u>기술사업화에</u> ----- 14. <u>비즈니스모델 관리 운영에</u> ----- 15. <u>산학협력단 설치 학교기업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u> ----- 16. <u>산학협력단 산하 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 운영 지원에</u> ----- 17. <u>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u> 18. <호삭제> 19. <호삭제> ③ <u>산학교육팀에</u> -----. 1. <u>산학교육에</u> 관한 기획 및 운영에 ----- 2. <u>사회수요 맞춤형교육 기획 및 운영</u> ----- 3. <u>현장실무교육 기획 및 운영에</u> 관한 ----- 4. <u>LINC+ 현장실습에</u> ----- 5. <u>LINC+ 교육프로그램 운영에</u> 관한 ----- 6. <u>캡스톤디자인 운영에</u> 관한 ----- 7. <u>학생 창업동아리 운영에</u> 관한 ----- 8. <u>가족회사 등 산업체 관리 운영에</u> 관한 ----- 9. <u>산업체 만족도 조사에</u> 관한 ----- 10. <u>산학협력 관련 업적관리 및 통계에</u> ----- 11. <u>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운영에</u> ----- 12. <u>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지원에</u> ----- 13. <u>창의융합교육센터 운영 지원에</u> ----- 14. <u>산학 일체형 매장 운영 지원에</u> 관한 업무 15.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생명윤리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6조(소위원회) 제2항의 제3호 내지 제7호를 삭제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 산하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u>배아연구기관 기관생명윤리위원회</u>	3. <호삭제>
4. <u>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기관생명윤리위원회</u>	4. <호삭제>
5. <u>단성생식배아연구기관 기관생명윤리위원회</u>	5. <호삭제>
6. <u>인체유래물은행 기관생명윤리위원회</u>	6. <호삭제>
7. <u>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기관 생명윤리위원회</u>	7. <호삭제>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전공심화과정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4조(임기) 제1항 중 “(중략) 1년으로”를 “(중략) 2년으로”로 한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1항 중 “(중략)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 및 교육과정편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중략)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 및 전공심화교육과정개발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조 제2항 중 “(중략) 구성비를 1/2 이상으로 한다.”를 “(중략) 구성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로 한다.
-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입학전형계획(설치학과 및 모집 인원)수립에 관한 사항 2. 입학사정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공심화과정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5. 전공심화과정 운영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① 전공심화교육과정개발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과정 편성(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전공심화과정 운영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 ②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전공심화과정 종합 평가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기타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 제16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개교기념일(5월 15일) 2. 일요일 3. 국정공휴일 ② 하계 및 동계방학 기간은 매 연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를 “전공심화과정의 휴업일은 학칙 제13조(휴업일)에 따른다.”로 한다.

－ 제24조(교육과정편성) 제2항중 “(중략) 교육과정개발위원회에서”를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조(임기) ①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직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생략)	제4조(임기) ① ----- <u>2년으로</u>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구성) ① 학위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 및 교육과정편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교수 및 관련 산업체 임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산업체 임직원의 구성비를 1/2 이상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 <u>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 및 전공심화교육과정개발운영위원회</u> ----- ② ----- ----- <u>구성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u>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입학전형계획(설치학과 및 모집 인원)수립에 관한 사항 2. 입학사정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공심화과정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5. 전공심화과정 운영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기능) ① <u>전공심화교육과정개발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u> <u>1. 교육과정 편성(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u>2. 전공심화과정 운영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u> <u>3. 기타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u> <u>②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u> <u>1. 전공심화과정 종합 평가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u> <u>2. 기타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u>

현행	개정
제16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개교기념일(5월 15일) 2. 일요일 3. 국정공휴일 ② 하계 및 동계방학 기간은 매 연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휴업일) 전공심화과정의 휴업일은 학칙 제13조(휴업일)에 따른다.
제24조(교육과정편성) ① (생략) ② 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u>교육과정개발위원회에서</u>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확정한다.	제24조(교육과정편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u>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u>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3조(구성) 제1항 중 “(중략) 교무처장이 된다.”를 “(중략) 총장이 임명한다.”로 한다.
- 제4조(임기) “(중략) 1년으로”를 “(중략) 2년으로”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u>교무처장이 된다.</u> ② (생략)	제3조(구성) ① ----- <u>총장이 임명한다.</u>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u>1년으로</u>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임기) ----- <u>2년으로</u>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재외국민 및 외국인학생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2조(재외국민 및 외국인학생의 범위 및 자격) “4. 국제교류처의 규정에”를 “4. 사무분장

규정 제16조에”로 한다.

– 제8조(재외국민 및 외국인학생의 선발) 제2항의 “국제개발원의 규정에”를 “사무분장 규정 제16조에”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재외국민 및 외국인학생의 범위 및 자격) 1. ~ 3.(생략) 4. 국제교류처의 규정에 의거 모집된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생 5. (생략)	제2조(재외국민 및 외국인학생의 범위 및 자격) 1. ~ 3.(현행과 같음) 4. 사무분장 규정 제16조에 ----- 5. (현행과 같음)
제8조(재외국민 및 외국인학생의 선발) ① (생략) ② 국제개발원의 규정에 의거 모집된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생	제8조(재외국민 및 외국인학생의 선발)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무분장 규정 제16조에 -----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한국어학당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1조(명칭) “(중략) 국제개발원 어학부”를 “(중략) 국제교류처”로 한다.

– 제3조(구성) 제3항의 “(중략) 국제개발원장이 따로 정한다.”를 “(중략) 국제교류처장이 따로 정한다.”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명칭) 이 기관은 우리대학 국제개발원 어학부 산하의 한국어학당(이하 ‘어학당’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1조(명칭) ----- 국제교류처 -----
제3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어학당의 교육과정 질 제고와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관리	제3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현행	개정
및 지원을 위하여 어학당에 전담교원을 둘 수 있으며, 전담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국제개발원장이 따로 정한다.	----- 국제교류처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 글로벌교육센터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1조(목적) “(중략) 국제개발원 운영규정 제4조에”를 “(중략) 사무분장규정 제16조에”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대학 국제개발원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하여 글로벌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의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무분장 규정 제16조에 -----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해외출장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1조(목적) “(중략) 국제개발원 운영규정 제4조에”를 “(중략) 사무분장규정 제16조에”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대학 국제개발원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하여 해외출장소의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1조(목적) ----- 사무분장 규정 제16조에 -----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현장(임상)실습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14조(실습지도) 제4항의 “(중략) 산학실습팀에”를 “(중략) 산학교육팀에”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제14조(실습지도) ④ 지도교수는 현장(임상)실습 종료 후 별도 출장복명서 및 간담 회의록을 작성하여 <u>산학실습팀에</u> 제출한다.	제14조(실습지도) ④ ----- ----- <u>산학교육팀에</u>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고등학교(실업계)연계교육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7조(운영위원회) 제4항의 “(중략) 사업운영팀장이”를 “(중략) 사업진흥팀장이”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제7조(운영위원회) ①~③ (생략)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u>사업운영팀장</u> 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u>사업진흥팀장</u>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산학현장학습교육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3조(편성 및 학점인정) 현장실습 항목의 실습기간 “18주 ~ 20주”를 “13주 ~ 16주”로 하고, “13주 ~ 16주”를 “10주 ~ 12주”로 하며, “9주 ~ 12주”를 “8주 ~ 9주”로 하고, 인정학점 “18학점”을 “18~20학점”으로 하고, “12학점”을 “14~16학점”으로 하며, “9학점”을 “10~12학점”으로 한다.
 - 제4조(현장학습 이수) 제1항의 “(중략) 18학점”을 “(중략) 20학점”으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제3조(편성 및 학점인정) (생략)				제3조(편성 및 학점인정) (생략)				
구분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	실습기간	구분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	실습기간	인정학점
학기제		현장실습 1	18주 ~ 20주	18학점	학기제	현장실습 1	13주~16주	18~20학점
		현장실습 2	13주 ~ 16주	12학점		현장실습 2	10주~12주	14~16학점
		현장실습 3	9주 ~ 12주	9학점		현장실습 3	8주~9주	10~12학점
제4조(현장학습 이수) ① 산학현장학습은 최대 18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제4조(현장학습 이수) ① ----- 20학점-----.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4.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3조(편성 및 학점인정) 현장실습 항목의 교과목 “현장실습1”을 “현장실습”으로 하며, 실습기간 “18주 ~20주”를 “13주~16주”로 하고, 인정학점 “18학점”을 “18~20학점”으로 한다. 같은조 교과목 “현장실습 2”와 “현장실습 3”을 삭제하고, “실습기간” 및 “인정학점”을 삭제한다.

– 제4조(현장학습 이수) 제1항의 “(중략) 18학점”을 “(중략) 20학점”으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조(편성 및 학점인정) (생략)				제3조(편성 및 학점인정) (생략)			
구분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	실습기간	인정학점	구분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	실습기간	인정학점
학기제	현장실습 1	18주 ~ 20주	18학점	학기제	현장실습	13주~16주	18~20학점
	현장실습 2	13주 ~ 16주	12학점		(삭제)	(삭제)	(삭제)
	현장실습 3	9주 ~ 12주	9학점		(삭제)	(삭제)	(삭제)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5. 부설연구소 설치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4조(임원) 제4항의 “(중략) 사업운영팀장이”를 “(중략) 사업진흥팀장이”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조(임원) ①~③ (생략) ④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u>사업운영팀장</u> 이 된다.	제4조(임원)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u>사업진흥팀장</u> 이 ---.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6.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5조(실행부서) “2. 산학실습팀”을 “산학교육팀”으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5조(실행부서) 1. (생략) 2. <u>산학실습팀</u> : 산업체 만족도 조사 3.~5. (생략)	제5조(실행부서) 1. (현행과 같음) 2. <u>산학교육팀</u> : ----- 3.~5.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7. 간접연구경비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1조(목적) “(중략) 간접연구경비를 징수하고 관리하는”을 “(중략) 간접연구경비(이하 “간접비”라 한다) 관리에 관한 세부”로 한다.
- 제2조(구성)의 “제2조(구성) 간접연구경비 조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대학의 학교비 예산 이외의 재원에서 지급된 각종 교외학술지원비 2. 교외학술지원비 지급기관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간접연구경비”를 “제2조(적용범위) 간접비와 관련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이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 제3조(사용)의 “제3조(사용) 간접연구경비는 교수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교수의 연구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연구 활동 지원과 관련된 자료발간비, 산학협력단의 운영경비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비등 3. 기타 연구자원에 필요한 경비 4. 특별 교외학술지원비 지급”을 “제3조(간접비 징수대상) ① 교외의 연구비 지원 기관으로부터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지급되는 모든 산학협력 사업비, 위탁사업비 및 교외연구비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별도로 인센티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 ③ 위탁·협동·공동연구비 1. 타 기관 연구자와 공동연구의 경우는 원광보건대학교 교직원에게 해당하는 연구비만 징수대상으로 하며 타 기관 간접비는 타 기관으로 이체한다. 2. 위 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하여 외부연구자의 연구비를 산학협력단에서 총괄 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연구자의 연구비에 해당하는 간접비도 징수대상에 포함한다.”로 한다.

– 제4조(징수 및 관리)의 “제4조(징수 및 관리) 간접연구경비의 징수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접연구경비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정한다. 2. 교외학술지원비에서 징수할 수 있는 간접연구경비는 교외학술지원비의 총액의 10%로 하고,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과제 관리지침에 따른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10% 이상 간접연구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와 지원기관에서 간접연구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징수하지 않는다. 3. 간접 연구경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일괄 징수하여 관리한다.”를 “제4조(간접비의 징수 면제) ① 교내연구과제와 지원기관에서 간접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위탁연구과제에 대하여는 간접비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일반수탁 연구과제 중 외부위탁기관과 계약에 따라 위탁, 협동 등 공동연구인 경우 그 위탁분의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연구비 내 현물 부담분은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 제5조(결산보고)의 “제5조(결산보고) 산학협력단장은 매 학년도 말에 간접 연구경비의 결산 내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제5조(간접비의 징수율) ① 간접비의 징수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정부 주도의 연구과제 : 연구비 지원기관이 허용하는 최대율을 계상 2. 산업체 및 기타과제 : 총연구비의 10% ② 간접비는 연구비 지급 시 징수한다.”로 한다.

– 제6조 내지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간접비의 사용범위) 간접비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력지원비 가.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경비 다.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라.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 마. 대학의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운영비 3. 성과활용지원비 가.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경비 나.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다. 기술창업 출원·출자금 등 라. 기술개발 결산 및 사업화 성과 평가, 회계감사비용 등에 관련된 경비 4. 기타 연구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로 산학협력단장이 인정하는 경비로 한다.”

“제7조(간접비의 사용제한) ① 교원 개인이나 학과에 인센티브(수당) 명목의 장려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준용) 간접비 회계의 관리 운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에 준용하며, 간접비 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광보건대학교(이하 “우리대학”이라 한다) 교외학술지원비 관리규정 제11조에 의한 <u>간접연구경비를 징수하고 관리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u>간접연구경비(이하 “간접비”라 한다) 관리에 관한 세부 -----.</u>
제2조(구성) 간접연구경비 조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대학의 학교비 예산 이외의 재원에서 지급된 각종 <u>교외학술지원비</u> 2. 교외학술지원비 지급기관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간접연구 <u>경비</u>	제2조(적용범위) 간접비와 관련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이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용) 간접연구경비는 교수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교수의 연구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연구 활동 지원과 관련된 자료발간비, 산학협력단의 운영경비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비등 3. 기타 연구지원에 필요한 경비 4. 특별 교외학술지원비 지급	제3조(간접비 징수대상) ① <u>교외의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지급되는 모든 산학협력 사업비, 위탁사업비 및 교외연구비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u> ② <u>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별도로 인센티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u> ③ <u>위탁·협동·공동연구비</u> 1. 타 기관 연구자와 공동연구의 경우는 원광보건대학교 교직원에게 해당하는 연구비만 징수대상으로 하며 타 기관 간접비는 타 기관으로 이체한다. 2. 위 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하여 외부연구자의 연구비를 산학협력단에서 총괄 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연구자의 연구비에 해당하는 간접비도 징수대상에 포함한다.
제4조(징수 및 관리) 간접연구경비의 징수 및 관리는 다음 각	제4조(간접비의 징수 면제) ① <u>교내연구과제와 지원기관에서</u>

현행	개정
호와 같다. 1. 간접연구경비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정한다. 2. 교외학술지원비에서 징수할 수 있는 간접연구경비는 교외학술지원비의 총액의 10%로 하고,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과제 관리지침에 따른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10% 이상 간접연구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와 지원기관에서 간접연구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징수하지 않는다. 3. 간접 연구경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일괄 징수하여 관리한다.	간접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위탁연구과제에 대하여는 간접비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일반수탁 연구과제 중 외부위탁기관과 계약에 따라 위탁, 협동 등 공동연구인 경우 그 위탁분의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연구비 내 현물 부담분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결산보고) 산학협력단장은 매 학년도 말에 간접 연구경비의 결산내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간접비의 징수율) ① 간접비의 징수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정부 주도의 연구과제 : 연구비 지원기관이 허용하는 최대율을 계상 2. 산업체 및 기타과제 : 총연구비의 10% ② 간접비는 연구비 지급 시 징수한다.
<조신설>	제6조(간접비의 사용범위) 간접비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력지원비 가.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나. 연구개발능력성숙과금 2. 연구지원비 가.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경비 다.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라.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 마. 대학의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운영비 3. 성과활용지원비 가.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경비 나.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등 라. 기술개발 결산 및 사업화 성과 평가, 회계감사비용 등에 관련된 경비 4. 기타 연구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로 산학협력단장이 인정하는 경비
<조신설>	제6조(간접비의 사용범위) 간접비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연 영	개 정
	<u>1. 인력지원비</u> <u>가.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u> <u>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u> <u>2. 연구지원비</u> <u>가.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공통지원경비</u> <u>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경비</u> <u>다.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u> <u>라.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u> <u>마. 대학의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운영비</u> <u>3. 성과활용지원비</u> <u>가.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경비</u> <u>나.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u> <u>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등</u> <u>라. 기술개발 결산 및 사업화 성과 평가, 회계감사비용 등에 관련된 경비</u> <u>4. 기타 연구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로 산학협력단장이 인정하는 경비</u>
<u><조신설></u>	<u>제7조(간접비의 사용제한) ① 교원 개인이나 학과에 인센티브(수당) 명목의 장려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u> <u>② 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u>
<u><조신설></u>	<u>제8조(준용) 간접비 회계의 관리 운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에 준용하며, 간접비 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u>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8. 산학협력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7조(행정지원) 제2항의 “(중략) 산학실습팀장으로”를 “(중략) 산학교육팀장으로”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제7조(행정지원) ②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u>산학실습팀장</u> 으로 한다.	제7조(행정지원) ② ----- ----- <u>산학교육팀장</u> 으로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 주문식교육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9조(간사와 서기) 제2항의 “(중략) 산학실습팀장으로”를 “(중략) 산학교육팀장으로”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생략) ② 간사는 <u>산학실습팀장</u> 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u>산학교육팀장</u> 으로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 실험실습기자재운영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5조(위원)의 “1. (중략) 사업운영팀장”을 “(중략) 사업진흥팀장”으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5조(위원) (생략) 1. 당연직위원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기획조정처장, 총무처장, 비서실장, 관리팀장, <u>사업운영팀장</u> , 기획조정팀장으로 한다. 2. (생략)	제5조(위원) (현행과 같음) 1. ----- ----- <u>사업진흥팀장</u> , ----- ----- 2.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1. 기업신속대응센터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제2항의 “(중략) 7인 이내의”를 “(중략) 10인 이내의”로 하며, 같은조 같은항 “(중략) 한다.”를 “(중략) 하고, 위원은 필요에 따라 외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로 한다.
- 제7조(운영위원회 기능) 제4항과 제5항을 삭제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u>7인 이내의</u>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직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u>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u> ④ (생략)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u>10인 이내의</u> ----- ----- ③ ----- ----- ----- <u>필요에 따라 외부</u> <u>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u>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위원회 기능) (생략) ①~③ (생략) ④ <u>사업의 적정성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u> ⑤ <u>센터 운영비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u> ⑥ (생략)	제7조(운영위원회 기능) (현행과 같음) ①~③ (현행과 같음) ④ <항삭제> ⑤ <항삭제> ⑥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2.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단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4항의 “(중략) 임명하고 평가관리실장이 위원장이 된다.”를 “(중략) 임명한다.”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 ③ (생략) ④ 자체평가위원회는 산업체 인사를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사업단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u>임명하고 평가관리실장이 위원장이 된다.</u> ⑤ ~ ⑥ (생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임명한다.</u> ⑤ ~ ⑥ (현행과 같음)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3.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7조(자체평가위원회) 제1항의 “평가관리실이 전담하고 평가위원장은 부총장을 당연직으로 하며”를 “평가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평가위원은”으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제7조(자체평가위원회) ① 평가관리실이 전담하고 평가위원장은 부총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10명 내외(교내·외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7조(자체평가위원회) ① 평가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평가위원은 -----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4.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1조(목적)의 “산학협력촉진에”를 “산학연협력촉진에”로 하고, 같은조 “(중략) 법”을 “(중략) 산학협력법”으로 한다.

－ 제4조(산학협력단의 업무) 제2항 “11.기타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업”을 “11. 위·수탁 협약기관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12호, 제13호를 신설한다.

“12. 건강가정 지원, 노인복지, 아동복지, 다문화복지 등 사회복지 관련 사업운영 및 위탁 관리에 관한 업무”

“13. 기타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업”

－ 제5조(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등)의 “1. (중략) 귀금속보석연구센터, 창업보육센터, 패션주얼리커플링사업단, 산단캠퍼스지원단”를 “1. (중략) 기업신속대응센터, 창의융합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다문화교육센터”로 하고, 같은조 “3. 학교기업 : 원광여행사, 주얼리컴퍼니, 푸드몰, 힐빙테라피”를 “3. 학교기업사업단”으로 한다.

－ 제9조(하부조직) 제1항의 “(중략) 학교기업사업단, 사업운영팀, 산학실습팀, 부설기관, 부설연구소를 둔다.”를 “(중략) 사업진흥팀, 산학교육팀, 학교기업사업단, 부설기관, 부설연구소를 두며, 외부기관과의 협약에 의해 운영하는 위·수탁 협약기관을 둘 수 있다.”로 하며, 같은조 제2항의 “(중략) 각 팀장은 직원으로 보하며, 부설기관장, 부설연구소장은 교원으로 보한다.”를 “(중략) 부설기관장 및 부설연구소장은 교원으로 보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3항의 “산학협력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팀에 직원,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다.”를 “위·수탁협약기관의 장은 전임교원 또는 비전임교원으로 보하되, 기관장이 상근인 경우에는 외부인을 보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조

제4항의“제1항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를 “각 부서에 팀장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각 부서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정한다.”

－ 제21조(시행세칙)의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를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외부기관과 협약에 의해 운영하는 위·수탁 협약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및 자체운영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제1조(목적) 이 정관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산학연협력촉진에 ----- --(-- “산학협력법” -----)-- -----,
제4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생략) ② (생략) 1. ~ 10. (생략) 11. 기타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업 12. <호신설> 13. <호신설>	제4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 11. 위·수탁 협약기관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12. 건강가정 지원, 노인복지, 아동복지, 다문화복지 등 사회복지 관련 사업운영 및 위탁 관리에 관한 업무 13. 기타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업
제5조(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등) (생략) 1. 부설기관 : 귀금속보석연구센터, 창업보육센터, 패션주얼리커플링사업단, 산단캠퍼스지원단 2. (생략) 3. 학교기업 : 원광여행사, 주얼리컴퍼니, 푸드몰, 힐빙테라피 4. (생략) 5. (생략)	제5조(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등) (현행과 같음) 1. 부설기관 : 기업신속대응센터, 창의융합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다문화교육센터 2. (현행과 같음) 3. 학교기업사업단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제9조(하부조직) ① 산학협력단에는 학교기업사업단, 사업운영팀, 산학실습팀, 부설기관, 부설연구소를 둔다.	제9조(하부조직) ① ----- 사업진흥팀, 산학교육팀, 학교기업사업단, 부설기관, 부설연구소를 두며, 외부기관과의

현행	개정
② 학교기업사업단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하며, 각 팀장은 직원으로 보하며, 부설기관장, 부설연구소장은 교원으로 보한다. ③ 산학협력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팀에 직원,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다. ④ 제 1 항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⑤ <항신설>	<u>협약에 의해 운영하는 위·수탁 협약기관을 둘 수 있다.</u> ② -----, <u>부설기관장 및 부설연구소장은 교원으로 보한다.</u> ③ <u>위·수탁협약기관의 장은 전임교원 또는 비전임교원으로 보하되, 기관장이 상근인 경우에는 외부인을 보할 수 있다.</u> ④ <u>각 부서에 팀장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각 부서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다.</u> <u>⑤ 제1항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정한다.</u>
제21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외부기관과 협약에 의해 운영하는 위·수탁 협약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u>협약서 및 자체운영규정에 따른다.</u>
	부칙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5.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2조(사업)의 “11.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을 “11. 위·수탁협약기관 및 수익사업 관리에 관한 업무”로 하고, 같은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

- 제3조(단장)을 조삭제 한다.

- 제4조(조직)의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을 삭제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 제6항의 “(중략) 사업운영팀장”을 “(중략) 사업진흥팀장”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중략) 사업운영팀 담당자”를 “(중략) 업무담당자”로 한다.

- 제14조(준용규정)의 “(중략) 산학협력촉진에”를 “(중략) 산학연협력촉진에”로 하고, 같은조 “(중략) 정관”을 “(중략) 법인 정관”으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제2조(사업) (생략) 1. ~ 10. (생략) 11.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 12. <호신설>	제2조(사업) (현행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 11. 위·수탁협약기관 및 수익사업 관리에 관한 업무 12.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
제3조(단장) 단장은 교원이나 일반직 4급 이상의 직원으로 임명한다.	제3조(단장) <조삭제>
제4조(조직) ① 산학협력단은 학교기업사업단, 사업운영팀, 산학실습팀, 부설기관, 부설연구소를 둔다. ② (생략) ③ 명예산학단장을 둘 수 있다. ④ 학교기업사업단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하며, 각 팀장은 직원으로 보하며, 부설기관장, 부설연구소장은 교원으로 보한다. ⑤ 산학협력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으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부설연구소에 임명된 교직원은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조직) ① <항삭제> ② (현행과 같음) ③ <항삭제> ④ <항삭제> ⑤ <항삭제> ⑥ <항삭제>
제5조(운영위원회) ① ~⑤ (생략) ⑥ 간사는 사업운영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운영팀 담당자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⑤ (현행과 같음) ⑥ -----사업진흥팀장-----, -----업무담당자-----.
제14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정한 세칙을 제외하고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산학협력단 정관 및 우리대학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준용규정) ----- -----산학협력촉진에----- -----법인 정관-----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6. 산학협력단 소속의 사업단 설립 등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8조(운영위원회) 제6항의 “(중략) 사업팀장”을 “(중략) 사업수행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8조(운영위원회) ① ~ ⑤ (생략) ⑥ 간사는 <u>사업팀장</u> 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단 담당자로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u>사업수행부서의 팀장</u> -----.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7. 산업체(중소기업) 기술지도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5조(기술지도위원회 구성) 제2항의 “(중략) 산학실습팀장”을 “(중략) 사업진흥팀장 또는 기업 신속대응센터 팀장”으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5조(기술지도위원회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 인 내외의 지도위원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간사는 <u>산학실습팀장</u> 으로 한다.	제5조(기술지도위원회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사업진흥팀장 또는 기업신속대응센터 팀장</u> -----.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9.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제6항의 “(중략) 사업운영팀장”을 “(중략) 사업진흥팀장”으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⑤ (생략) ⑥ 간사는 <u>사업운영팀장</u> 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⑦ (생략)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u>사업진흥팀장</u> ----- ⑦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0. 혁신교육원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5조(기능)의 제5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위한 개발 및 지원 업무”

“6. 원격교육의 계획·운영·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7. 원격교육시스템(LMS) 개발 관리운영 및 원격교육 콘텐츠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8.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교육과정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같은조 기존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호이동한다.

“9. 기타 교육품질 향상을 위한 부수적인 업무”

- 제8조(위원회의 기능)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혁신교육원 주요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관리·평가 등 전반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로 하는 사항”

같은조 기존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호이동한다.

“7. 그 밖에 대학 교육혁신에 관한 사항”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제5조(기능) (생략) 1. ~ 4. (생략) 5. <호신설> 6. <호신설> 7. <호신설> 8. <호신설> 9. <호신설> 5. <호이동> 기타 교육품질 향상을 위한 부수적인 업무	제5조(기능)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위한 개발 및 지원 업무 6. 원격교육의 계획·운영·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7. 원격교육시스템(LMS) 개발 관리운영 및 원격교육 콘텐츠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8.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교육과정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5.(생략) 6. <호신설> 6. <호이동> 그 밖에 대학 교육혁신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기능) (현행과 같음) 1. ~ 5.(현행과 같음) 6. 혁신교육원 주요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관리·평가 등 전반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로 하는 사항 7.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1. 학과 인증평가관리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가. 제정문

“

학과 인증·평가 관리운영 규정(안)

제정 2020.00.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과단위의 평가 및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과 지원을 규정하고 체계를 확립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우리대학에 설치 운영되는 모든 모집단위(학과)의 평가 및 인증제도를 대응 운영함에 있어 대학 차원의 지원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②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이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각 학과별 인증에 관한 사항은 인증관리기관의 운영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제3조(책무) 대학은 각 학과의 인증평가를 운영함에 있어 그 아래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며 지원한다.

1. 각 학과단위의 인증평가 수행의 당위성 확인

2. 인증평가 진행의 관리 운영 및 지원 조직 구성
3. 인증평가 업무 진행이 계획 수립
4. 인증평가 업무 진행에 지원에 관한 사항
5. 인증평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인증평가 추진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인증평가 진행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

제4조(평가인증사업) ① 우리대학에 설치 운영되는 모든 학과의 평가인증에 관리운영을 하도록 하며 고등교육법 등 교육부의 공식적인 관리 운영 분야에 한하여 제한하여 지원하도록 하며 총장이 판단하여 그 범위를 제한 할 수 있다.

② 평가인증 업무를 지원 관리하는 학과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간호인증평가 운영
2.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 운영
3. 교원양성기관 평가 인증 운영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평가 인증

제5조(지원 및 관리) ① 대학은 학과단위 평가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직과 인력을 지원하도록 한다.

② 학과와 대학본부가 협력하여 평가인증 업무를 관리 운영하도록 하며 주기적으로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는 평가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품질을 유지·개선하기 위해 년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대학은 학과단위의 평가인증에 관하여 각 인증프로그램 운영방법을 규정하여 운영 하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참여 하고 지원하도록 한다

제6조(위원회) ① 각 학과별로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평가인증 단위별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각 운영위원회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하에 세부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인증의 선 순환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두고 구성 및 운영은 대학자체평가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제7조(운영 T/F팀) ① 학과단위 평가인증 업무 추진을 위하여 운영 T/F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 담당자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운영 T/F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평가인증 관련 규정의 제정비 및 개정
2. 실제(사실) 데이터 확보를 위한 규정별 표준 양식류 제정
3.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을 위한 평가인증 평가요소별 직무 프로세스 표준화
4. 각 평가요소별 객관적 증거인 입증 및 비치 자료 준비
5.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6.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대응
7. 인증 결과에 대한 재심 여부 협의

제8조(예산) 평가인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우리대학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타) 평가인증 업무 수행에 있어 발생 되는 기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가. 제정문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정 2020.00.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한다)에 의해 설치되는 시·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운영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한 원광보건대학교(이하‘우리 대학’이라 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센터의 모든 조직과 구성원에 적용된다.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지역 내 어린이 대상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2.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 영양·식사지도,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지원
3. 위생관리지침, 위생·안전관리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4. 어린이 대상 급식소의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정보제공
5. 그 밖에 특별법에서 정한 센터 사업 및 업무

제4조(조직) 센터의 조직은 기획운영팀, 위생팀, 영양팀으로 구성한다. 다만, 센터의 규모에 따라 센터장의 승인하에 달리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센터장) 센터장은 우리 대학 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역할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3. 사업 협약, 체결, 변경, 해지 등의 추진
4. 직원관리
5. 운영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총괄
6. 그 밖에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직원의 채용 및 직무범위) ① 센터의 직원(팀장, 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이하 ‘센터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에 의한 직원 채용절차를 따르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 업무담당자의 직무범위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및 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르며 각 팀의 세부업무는 센터장이 분장한다.

③ 센터 직원 복무에 관한 지침은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식품 또는 급식관련 전문가 및 관할지역 내 어린이 급식소 원장, 관계 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 소속 업무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 개진 및 자문
2. 센터 사업 예산 심의·의결

3.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 내역의 변경에 따른 심의

4.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계연도)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조정될 경우 해당 사업기간에 준한다.

②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를 구분한다.

제11조(법률행위의 주체) 산학협력단은 센터 위탁운영사업의 계약체결, 회계관리, 재정집행 등을 담당하며, 사업에 관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12조(재정관리) ① 센터의 재정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의 보조금, 후원금, 이월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센터의 재정관리를 위하여 산학협력단 회계 안에 센터 계정을 설치하고 센터의 모든 수입 및 지출관리는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제13조(회계) 센터 운영에 수반되는 회계업무는 센터 가이드라인의 재정관리 원칙과 예산회계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4조(예산) ① 센터장은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을 확인 후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수립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예산안을 지자체에 제출하고 지자체의 승인을 거쳐 당해 사업연도의 센터 예산을 최종 확정한다.

③ 예산 내역 변경 또는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지자체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한다.

제15조(결산) 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즉시 정산보고서 및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정산보고서 및 결산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에 제출하여 정산을 완료한 후에 지자체에 제출한다.

③ 회계법인에 지불하는 정산 수수료는 사업 예산항목 중 간접비에 포함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지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3. 다음 규정을 폐지한다.

- 국제개발원운영규정
- 글로벌다문화교육원규정
- 귀금속보석연구센터운영규정
-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규정
-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인증센터 운영규정

끝.